



대학발전기금규정

제정일	2015.11. 1
개정일	2019. 1. 1
개정차수	2차
담당부서	기획예산과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발전기금의 조성, 운영 및 집행과 관리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 3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
 「지정발전기금」은 기부자가 사용처를 특정하여 기탁한 기부금 등을 말한다.
 「일반발전기금」은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기부금 등을 말한다.
- 제 4조 (기금구성) 기금은 기부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한다.
- 제 5조 (심의기구) 기금의 조성, 운영 및 관리 등을 다루기 위하여 발전기금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- 제 6조 (위원회 구성) 본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부총장, 각 행정처장 및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9. 1. 1)
- 제 7조 (회의록)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- 제 8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기금 조성, 운용 및 관리
 2. 기금의 사용
 3. 기타 위 각 호에 관련된 주요 사항
- 제 9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규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기획처 기획예산과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10조 (기부형태) ① 기부형태는 현금 등으로 한다.
 ② 기부자는 자기가 기부한 기금의 사용내역 및 기금운용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.
- 제 11조 (기금의 종류) 기금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.
 1. 지정발전기금 : 기부자가 특정용도를 지정한 출연기금으로 장학기금, 건축기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.
 2. 일반발전기금 : 기부자가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금
- 제 12조 (기금의 배정) ① 지정발전기금은 기부자가 특정한 사용목적에 따라 기금에 산입되며,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전용될 수 없다.
 ② 일반발전기금은 기부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, 발전기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- 제 13조 (내역의 명시)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 14조 (업무분장) 기금의 접수 및 자료관리는 기획처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, 입금 및 기금운용의 실무는 사무국 경리과에서 주관한다.

제 15조 (관련법령 및 규정) 이 규정의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.

1. 소득세법
2. 조세특례제한법
3. 법인세법

제 16조 (기부자에 대한 예우)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예우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